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보험료율

김미화 연구원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인상될 예정임.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정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방안은 급여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음. 한편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인상됨¹⁾

-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2017년 인상률 4.08%보다 7.26%p 높은 11.34%로 결정됨
 -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인상됨²⁾
 -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임(〈표 1〉 참조)

〈표 1〉 2018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구분	평균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2017	4.08	4.02	3.21	8.90	7.40	3.65	0	3.08
2018	11.34	9.87	7.6	10.1	9.57	14.68	0	2.04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1.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11. 30)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1. 7),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7. 5. 30. 시행)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급 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됨

■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³⁾이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대책⁴⁾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월 본인부담은 월 334,680원~391,140원으로 증가하지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860원을 부담하게 됨⁵⁾
 -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 월 본인부담이 138,990원~208,120원으로 증가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별로 월 55,590원~124,870원을 부담하게 됨

■ 정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를 확대방안은 급여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음⁶⁾

-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 급여 이용률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급여자나 기초수급자의 이용 일수가 일반소득자나 경감대상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⁷⁾
 - 인정자 수 대비 실제 급여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보면, 전체 이용률은 87.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소득자는 90.5%, 기초수급자는 92.9%,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5.2%, 경감대상자는 84.5%로 나타남
 - 특히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의 급여 이용률이 가장 낮아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치료가 아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은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20%로 동일하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신체기능 저하군의 요양병원 입원 시 수가는 27,127원인 반면,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55,060원⁸⁾으로 요양병원 수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⁹⁾

3)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단, 기타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층 등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4)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경감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함(현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경감률 50% 적용 → 변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경감률 적용 + 중위소득 51~100%는 40% 경감률 적용)

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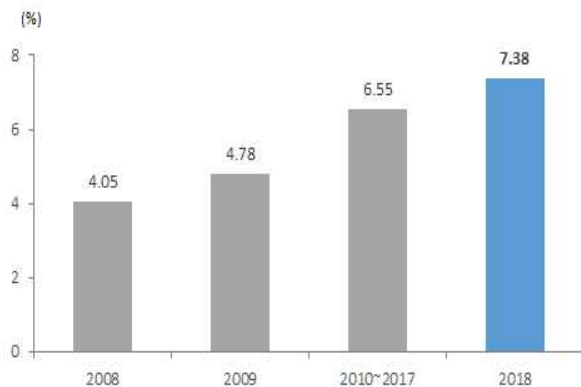
6) 권진희(2017),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제15권 제2호(통권 제57호)

7) 선우덕 외(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8) 수가 인상에 따라 2018년에는 60,490원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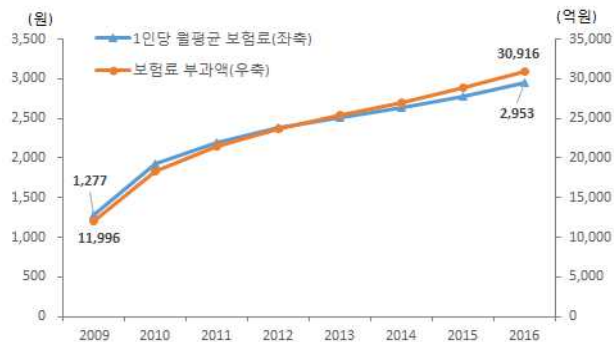
9) 이정택(2017),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 『고령화리뷰』, 2017년 제14호 포커스, 보험연구원

〈그림 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1. 7)

〈그림 2〉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 및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추이



주: 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한편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 인상 이후 처음으로 0.83%p 인상됨(〈그림 1〉 참조)
 -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되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0.83%p 인상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보험료 부과액에 연동¹⁰⁾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향후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09년 1,277원에서 2016년 2,953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 참조) [kiri](#)

1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세대 단위),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